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1. 13 선고 2021가단9842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. 13.

## 주 문

1. 피고와 B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2018. 6. 3. 40,611,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40,611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이균철

## 청 구 원 인

### 1. 기초사실

#### 가. 당사자간의 관계

피고 A은 소외 B(이하 'B'이라 합니다)의 모친이고, 원고는 B에게 국세 채권이 있는 자입니다. (갑 제1호증 가족사항 조회 국세청 전산자료 참조)

#### 나.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 경위

B은 2018. 5. 28. 본인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C아파트 D호 아파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합니다)를 2018. 2. 5. 소외 E에게 448,000,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. 5. 28.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8476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(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, 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참조). B은 2019. 5. 31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 하였으나 그 납부할 세액 74,806,59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(갑 제4호증 양도소득세신고서 참조).

과주세무서장은 2020. 1. 10. B에게 위 미납된 양도소득세 78,323,752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20. 1. 31.으로 하여 납세고지하였고, B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그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.

B은 표1] 과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 가산세 등 12,923,270원을 포함하

여 총 91,247,020원(이하 '이 사건 국세채권'이라 합니다)을 체납하고 있습니다.

표1] B의 2021. 8. 1. 현재 국세채납액(갑 제5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)

(단위: 원)

| 세목    | 귀속   | 납세의무<br>성립일 | 납부기한       | 고지세액       | 체납액        | 관할서 |
|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양도소득세 | 2018 | 2018.5.31.  | 2020.3.31. | 78,323,750 | 91,247,020 | 파주  |
| 합 계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78,323,750 | 91,247,020 |     |

#### 다. B의 현금 증여 경위

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2018. 2. 3. 5,000,000원, 2018. 2. 5. 40,000,000원, 2018. 5. 1. 80,000,000원, 2018. 5. 28. 123,076,989원을 수령하였고, 표2] 와 같이 2018. 6. 3.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(계좌번호 1 생략)에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(계좌번호 2 생략)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40,611,000원을 피고에게 현금 증여(이하 '이 사건 현금증여'라고 합니다) 하였습니다. (갑 제6호증 양도대금수령계좌거래내역, 갑 제7호증 B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한 내역)

표2] B이 피고 A에게 송금한 내역

(단위: 원)

| 순번 | 거래일자        | 거래금액       | 상대계좌              | 상대<br>예금주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1  | 2018. 6. 3. | 40,611,000 | 우리 (계좌번호 2<br>생략) | A         |    |
| 합계 |             | 40,611,000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

## 2. 손해행위취소 청구

### 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, 국세기본법 제21조(납세의무의 성립시기) 제3항 제2호1)에 의하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.

이 사건 부동산은 2018. 2. 5.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18. 5. 28. 잔금 수령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8. 5. 31.입니다.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손해행위일(2018. 6. 3.)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.

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,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(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).

B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하기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E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따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, 제47조의4 소정의 신고

1) 국세기본법 제21조 【납세의무의 성립시기】

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2. 납세조항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: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

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(이하 ‘이 사건 가산세 채권’이라 한다)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,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, B가 2019. 5. 31. 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기한후 신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, B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가산세 채권도 이 사건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.

#### 나. 사해행위

##### 1) 사해행위의 의미

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‘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’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,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,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(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).

##### 2) 이 사건의 경우

이 사건 현금증여 당시 B은 아래 표3]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, 이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. 따라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(갑 제8호증 채납자 재산 전산자료 참조).

표3] 이 사건 현금증여 당시 B의 재산내역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| 종류           |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액(원)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적극재산<br>(①)             | 예금           | 우리 (계좌번호 1 생략) 잔액                    | 40,611,103  | '18.6.3.<br>잔액 <sup>2)</sup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국민 (계좌번호 3 생략) 잔액                    | 7,943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농협 (계좌번호 4 생략) 잔액                    | 79,990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농협 (계좌번호 5 생략) 잔액                    | 63,895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합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,619,046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극재산<br>(②)             | 조세채무         | 이 사건 양도소득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1,247,02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 (③ = ① - ②)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△50,627,974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해행위<br>(④)             | 이 사건<br>현금증여 | '18. 6. 3. A 우리(계좌번호 2 생략) 계좌로<br>송금 | 40,611,00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채무초과 (③-④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△91,238,974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다.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

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 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

2) 갑 제9호증 2018. 6. 3. 기준 B 계좌 잔액내역 참조

하고,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삽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(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).

B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7년 취득하여 2018년 양도하면서 국세의 신고·납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40,611,000원을 증여하였습니다. 이는 국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한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.

또한,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). 피고 A은 B의 모친인바, 이 사건 현금증여 당시에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.

#### 라. 사해행위를 안날

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국세채납액 징수를 위해 2021년 4월 1일경 B의 금융거래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검토하던 중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현금증여 사실 및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.

#### 마. 소결

이 사건 현금증여액인 40,611,000원이 피보전채권액 91,247,020원을 초과하지 않는바, B과 피고 사이에 2018. 6. 3. 40,611,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전부 취소되어야 합니다.

### 3. 원상회복 청구

위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,611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### 4. 결론

이상과 같이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 끝.

